



## 망인은 자신의 업무에서 비롯된 지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혈압이 악화되어 뇌내출혈 및 심근경색의 발병으로 사망에 이르렀고,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사건 주제 : 유족보상금등지급부결처분취소  
심 급 : 서울고등법원  
선고 일자 : 2010. 3. 19.  
사건 번호 : 2009누9385  
당 사 자 : <원고> 원고  
<피고> 공무원연금공단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8.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부지급 및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자신의 업무에서 비롯된 지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혈압이 악화되어 뇌내출혈 및 심근경색의 발병으로 사망에 이르렀고,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기 전까지 ○○위원회 ○○실 ○○팀 소속 행정 사무관이었는데, 소속 부서 내에서 유일하게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기본업무 외에도 법률 검토와 관련된 업무를 다수 처리하였으며, 그에 따라 다른 행정사무관에 비하여 2-3배에 달하는 문서처리를 하는 등 그 업무가 과중하고 업무에 대한 책임감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특히 2007. 10.경에는 국정감사 준비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달에 비하여 업무량이 대폭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2007. 9.까지는 매월 평균 10시간 내외의 초과근무를 수행하였으나 2007. 10.에는 44시간 48분의 초과근무를 수행하였으며,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총 11명의 국회의원으로부터 질의를 받아 총 16건의 답변을 하는 등 사망 직전에 업무가 더욱 과중하였고, 국정감사 준비업무의 특성상 상당한 수준의 긴장이 계속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도 더욱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한 달 정도 계속된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상당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가 2007. 10. 18. 종료하자 망인은 충분한 휴식 없이 2007. 10. 19. ‘혁신워크숍’에 참가하였

고, 2007. 10. 20.(토) 8시간, 2007. 10. 21.(일) 7시간의 초과근무를 수행하여 피로와 스트레스가 더욱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비록 망인이 2007. 10. 23. 이후에 초과근무를 하였다는 자료는 없으나, 갑제7호증, 갑제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관련법에 관한 25쪽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2007. 10. 25. ○○위원장에게 제출하였고, 2007. 10. 29.로 예정된 강의를 위하여 21쪽 분량의 강의안을 작성하는 등 자신의 기본업무 외에도 부가적인 업무를 계속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약 6일 동안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그 기간 동안에 과중한 기본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결국 망인은 그 동안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를 충분히 해소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망인이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관련법령에 대하여 강연을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강연업무 자체가 과중한 업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강연 당시 망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강연에 상당한 심리적·육체적 부담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망인은 본태성 고혈압이라는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었지만 고위험군의 고혈압이 아니고 2004. 이후 특별한 치료 없이도 건강하게 생활해 온 점 등 망인의 업무내용, 업무량, 근무환경, 업무에 종사한 기

간 및 나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고혈압이 업무수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않지만,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내출혈과 그로 인한 심근경색증을 유발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것으로 추단된다.

(2) 따라서 망인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관계 법령

##### ◆ 구 공무원연금법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 제35조 (공무상요양비)

①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의 요양을 하는 때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한다.

1. 진단
2. 약제·치료제 및 보철구의 교부
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4. 병원 또는 요양소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

② 제1항의 공무상요양비는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요양에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제61조 (유족보상금)

①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유족보상금의 금액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보수월액의 36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공무상요양비)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한다.

1. 공무수행 중의 사고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된 부상 또는 이로 인한 질병
  2. 공무수행 중에 라디오파사선·자외선·엑스선 기타 유해방사선의 취급으로 인한 질병
  3. 공무수행 중의 화상 또는 동상
  4. 공무수행 장소의 심한 분진의 발생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
  5. 공무수행 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
  6. 공무수행 중의 유해가스 또는 유해독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합병증 및 후유증
  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으로서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특수한 직무수행으로 발생된 질병
  8. 평소의 질병·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상태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직무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
- 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 아래서의 계속적인 직무의 수행
- 나.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
- 다.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